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3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장겸 · 권성동 · 김재섭
추경호 · 박덕흠 · 최은석
서범수 · 이상희 · 서천호
강대식 · 인요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KT 해킹 사례와 같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이용자보호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등(이하 “침해사고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서비스(이하 “이용자보호서비스”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 일시·내용
2. 이용자보호서비스 해지 방법·절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이용자보호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재난 등(이하 “침해사고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서비스(이하 “이용자보호서비스”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 일시

· 내용

2. 이용자보호서비스 해지 방법

· 절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